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3003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3003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1981 판결

전문

원고(탈퇴)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상고인 1. 주식회사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판 결 선 고 2021. 6. 30.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2020나1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격남용, 제3자의 채권침해,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